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34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5. 28.
- 라. 회부일자 : 2024. 5. 28.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III.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관련서류 : 2023회계연도 결산서(안)

IV. 2023회계연도 결산

1. 금천구 결산 총괄

1) 2023회계연도 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C=A-B)
합 계	907,504,542,186	939,282,403,857	719,070,318,639	220,212,085,218
일반회계	871,278,405,646	902,765,906,394	706,977,285,639	195,788,620,755
특별회계	36,226,136,540	36,516,497,463	12,093,033,000	24,423,464,463

회 계 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합 계	40,295,193,340	41,493,613,360	28억	8,254,748,246	△854,022,640		128,222,552,912
일반회계	40,295,193,340	38,049,025,250	28억	8,224,906,056	△851,142,640		107,270,638,749
특별회계	-	3,444,588,110	-	29,842,190	△2,880,000		20,951,914,163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39,282,403,857원으로 예산현액 907,504,542,186원보다 31,777,861,671원이 더 수납됨.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의 76.5%인 719,070,318,639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0,212,085,218원임. 이 중 명시이월비 40,295,193,340원, 사고이월비 41,493,613,360원과 계속비이월 2,800,000,00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7,400,725,606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 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28,222,552,912원임.

2)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계	기편성예산	추경재원조정액	비 고
합 계	128,222,552,912	97,666,681,000	30,505,871,912	
일 반 회 계	107,270,638,749	78,215,001,000	29,005,637,749	
특 별 회 계	20,951,914,163	19,451,680,000	1,500,234,163	

○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128,222,552,912원으로서 2024년도 예산에 기편성된 일반회계 78,215,001,000원과 특별회계 19,451,680,000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29,005,637,749원과 특별회계 1,500,234,163원을 합한 30,505,871,912원이 2024년도 추경재원으로 편성 가능한 금액임.

3)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지출잔액(D=A-B-C)
합 계	48,431,748,000	130,000,000	119,500,000	0	10,500,000
일 반 회 계	48,331,748,000	130,000,000	119,500,000	0	10,500,000
특 별 회 계	100,000,000	0	0	0	

○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8,431,748,000원으로서 전년도 32,473,993,000원보다 15,957,755,000원 증가하였으며, 『생활보장 부가지원사업』으로 130,000,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19,500,00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10,500,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함.

4)이월사업비

(단위 : 원)

회 계 별	총합계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84,588,806,700	40,295,193,340	41,493,613,360	2,800,000,000
일반회계	81,144,221,590	40,295,193,340	38,049,025,250	2,800,000,000
특별회계	3,444,588,110	-	3,444,588,110	-

○ 2024회계연도로 사업별 이월 사업비는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운영』 등 총 135건인 84,588,806,70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는 『관용차량 운영』 등 총 40,295,193,34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효율적인 청사 관리』 등 41,493,613,360원, 계속비이월은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등 2,800,000,000원임.

5) 기금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39,960	1,546	11,109	9,563	41,506
남북교류협력기금	153	52	53	1	205
재난관리기금	6,813	△984	1,153	2,137	5,82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799	2,742	2,742	0	20,542
청년미래기금	2,060	63	113	50	2,123
중소기업육성기금	5,911	△853	4,065	4,919	5,058
자활기금	916	184	233	49	1,100
노인복지기금	351	0.5	7	7	351
양성평등기금	461	△31	9	40	429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476	△5	23	28	471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308	38	41	2	347
옥외광고발전기금	1,133	△132	148	281	1,000
도로굴착복구기금	2,690	486	2,417	1,931	3,177
식품진흥기금	883	△15	99	115	867

○ 본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말 39,960,529,938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1,109,730,656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563,328,975원이고 차인잔액은 1,546,401,681원임

2. 복지가족국 결산 총괄

가. 복지가족국 세입 총괄

(일반회계)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 (B/A)
계	275,980,669,000	276,623,251,940	276,476,263,830	99.9%
복지정책과	6,110,739,000	6,595,799,610	6,595,383,020	99.9%
복지지원과	68,079,791,000	68,553,861,570	68,515,352,320	99.9%
어르신 장애인과	129,182,221,000	129,076,269,780	128,975,779,810	99.9%
가족정책과	61,220,936,000	60,939,532,750	60,936,382,750	99.9%
아동청소년과	11,386,982,000	11,457,788,230	11,453,365,930	99.9%

나. 복지가족국 세출 총괄

(일반회계)

(단위:원)

부서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집행률 (B/A)
계	376,224,594,600	352,779,111,600	16,183,787,100	2,870,280,638	93.7%
복지정책과	18,343,916,000	17,600,646,216		564,438,336	95.9%
복지지원과	80,134,858,000	79,107,371,829		137,110,821	98.7%
어르신 장애인과	168,263,695,000	162,589,410,600	3,529,968,180	588,298,808	96.6%
가족정책과	92,212,089,600	76,774,682,395	12,621,218,920	1,285,824,765	83.2%
아동청소년과	17,270,036,000	16,707,000,560	32,600,000	294,607,908	96.7%

다. 집행잔액
(일반회계)

(단위:원)

부서명	계	사 유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계	2,870,280,638	1,510,281,062	0	0
		13,714,430	1,346,285,146	0
복지정책과	564,438,336	147,509,306		
		440,000	416,489,030	
복지지원과	137,110,821	81,963,290	0	0
		0	55,147,531	0
어르신 장애인과	588,298,808	351,313,708	0	0
		0	236,985,100	0
가족정책과	1,285,824,765	728,904,000		
			556,920,765	
이동청소년과	294,607,908	204,651,458	0	0
		13,274,430	76,682,020	0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단위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 (B/A)
계	1,273,998,000	2,338,120,500	1,331,436,450	56.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82,598,000	1,115,105,810	730,024,760	65.4%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91,400,000	1,223,014,690	601,411,690	49.2%

나. 세출결산

(단위: 원)

구분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집행률 (B/A)
계	1,273,998,000	681,052,690		566,843,120	53.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82,598,000	656,494,690		1,120	96.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91,400,000	24,558,000		566,842,000	4.15%

4. 예산의 전용 : 7건

(단위: 원)

부서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유
			감액	증액	
복지정책과	공공운영비	43,664,000	6,000,000		현재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에서 보훈회관 환경정비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중이나, 하반기부터 단순노무 업무가 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체 예산 확보 필요
	기간제 근로자보수	70,606,000		6,000,000	
복지정책과	공공운영	37,664,000	1,500,000		연식이 오래되어 고장 및 수리불가능한 보훈회관 냉장고를 혹서기 전 신속한 교체 구매 필요
	자산물품 취득			1,500,000	
복지지원과	주거급여	25,700,230,000	42,295,000		생계급여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 확보
	생계급여	43,788,766,000		42,295,000	
복지지원과	생활보장 부가지원	805,740,000	3,000,000		자활근로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부담분 확보[복지지원과-21217(2023.11.24.)]
	자활지원	3,698,164,000		3,000,000	
아동청소년과	아동통합 서비스	62,000,000	4,000,000		하반기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부족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 확보[아동청소년과-17598(2023.12.8.)]
	행사운영비	52,676,000		4,000,000	

부서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유
			감액	증액	
아동청소년과	아동통합서비스	71,000,000	9,000,000		대체인력 실근무에 따른 수당, 여비 등 증가에 따른 부족분 확보
	기간제보수	98,900,000		9,000,000	
아동청소년과	공무직보수	66,750,000	200,000		공무직 보험료 부족액 확보
	공무직 보험료	4,200,000		200,000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2	16,183,787	13	12,731,188	9	3,452,598
어르신장애인과	6	3,529,968	4	3,317,336	2	212,631
가족정책과	14	12,621,219	9	9,413,852	5	3,207,367
아동청소년과	2	32,600	-	-	2	32,600

가. 명시이월 사업 현황 : 13건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다음연도이월액	이월사유
어르신장애인과	노인여가복합시설조성	사무관리비	67,252	11,550	55,702	연도 내 지출 불가(토지매입대상 5필지 중 4필지는 2024년 4월 중 등기이전 예정으로 수수료 연도 내 지출불가)
		시설비	7,020,748	3,806,135	3,214,612	연도 내 지출 불가(토지매입대상 5필지 중 4필지는 2024년 4월 중 등기이전 예정으로 수수료 연도 내 지출불가)

	경로당 특별냉난방비지원	시 설 비	183,805	72,568	31,820	연도 내 지출불가(난방비 지원 목적으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2024년 난방비 추가집행 예정)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보 상 금	162,482	147,279	15,202	연도 내 지출 불가 연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 통보에 따라 연장
가 족 정 책 과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시 설 비	363,000	31,458	328,000	2023.11. 설계용역 착수하여 2024년도에 키즈카페 조성 공사 실시예정으로 연도내 지출불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감 리 비	7,000	0	7,000	2023.11. 설계용역 착수하여 2024년도에 키즈카페 조성 공사 실시예정으로 연도내 지출불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자산취득비	10,000	0	10,000	2023.11. 설계용역 착수하여 2024년도에 키즈카페 조성 공사 실시예정으로 연도내 지출불가
	구립별하 어린이집 신축	시 설 비	3,931,866	3,322,032	942,114	공사 착공 후 암반 발견되어 설계변경 등 조치로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
	구립별하 어린이집 신축	감 리 비	65,801	62,022	32,119	공사 착공 후 암반 발견되어 설계변경 등 조치로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 혜 금 (지방재원)	137,400	22,800	111,000	연도 내 지출 불가('23. 12.까지 신청기준 충족한 대상자가 '24년 신청 시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생활문화 센터조성	시 설 비	602,270	373,510	238,000	2023. 10. 신축공사 착공하여 2025. 7. 준공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함.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	시 설 비	8,027,880	4,956,766	7,207,880	2023. 10. 신축공사 착공하여 2025. 7. 준공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함.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	감 리 비	1,251,050	1,008,780	537,738	2023. 10. 신축공사 착공하여 2025. 7. 준공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함.

나. 사고이월 사업 현황 : 9건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다음연도이월액	이월사유
어르신 장애인과	경로당 저탄소 건물전환	시 설 비	120,613	119,736	103,731	현장실사 시 추가 보강발견으로 인한 사고 이월
	장애인 편익증진	자 산 물 품 취 득	378,590	366,300	108,900	장애인·노약자 등 이동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전기저상버스 구매계약 체결하였으나 납품예정일이 2024.3.15.로 납품 대금 이월.
가 족 정책과	구립별하 어린이집 신축	시 설 비	3,931,866	3,322,032	2,212,812	공사 착공 후 암반 발견되어 설계변경 등 조치로 연도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
		감 리 비	65,801	62,022	33,682	공사 착공 후 암반 발견되어 설계변경 등 조치로 연도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
		시설부대비	9,561	4,196	5,364	공사 착공 후 암반 발견되어 설계변경 등 조치로 연도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
	생활문화 센터조성	시 설 비	602,270	373,510	135,578	2023. 10. 신축공사 착공하여 2025. 7. 준공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함.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	시 설 비	8,027,880	4,956,766	819,930	2023. 10. 신축공사 착공하여 2025. 7. 준공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함.
아 동 청소년과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유지·관리	연구용역비	20,000	19,600	19,60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개정 매뉴얼 발표 연기(당초 9월 발표 → 실제 11월 발표)로 연구용역 과업수행 일정 지연에 따라 용역기간 연장계약하여 연내 집행 불가
	금천구청 소년상담 복지센터 이전조성	시 설 비	21,890	21,000	13,000	2024년 시행되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축 자재 등 2024년 물가정보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기간 설정('23. 10월 ~ '24. 2월)

6.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수령액 [㉠]	집행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금 액	비율(%)
계	332,284,365	331,495,785	317,680,388	8,699,271	5,120,120	1.54
복지정책과	8,278,933	8,233,304	7,951,592		282,711	3.55
복지지원과	77,354,238	77,354,238	76,381,899		972,338	1.27
어르신장애인과	151,390,995	151,130,085	149,232,939	259,653	1,637,492	1.09
가족정책과	80,334,575	79,846,578	69,635,688	8,439,618	1,774,270	2.54
아동청소년과	14,925,624	14,931,580	14,478,270		453,309	3.13

7.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1,728,762	153,402	250,501	97,099	1,882,164
자활기금	916,250	184,245	233,494	49,249	1,100,495
노인복지기금	351,435	507	7,884	7,377	351,942
양성평등기금	461,077	△31,350	9,123	40,473	429,727

8. 성과 보고

(단위: 천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 수	정책 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 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 성			
계	1	8	15	0	15	0	353,460,164	340,222,598	13,237,566
복지가족국	1	8	15	0	15	0	353,460,164	340,222,598	13,237,566

가.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각지대 없는 스마트 안전망 구축 ◦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취약계층 저소득주민 복지 향상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 지원 ◦ 함께 키우고 가꾸는 금천의 미래, 만족도 높은 가족친화도시 기반 마련 ◦ 아동, 청소년 안전망 운영 활성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

나. 정책사업목표 현황

(단위 : 천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중심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민관협력 서비스 연계 및 지원 • 통합 돌봄서비스 강화 	3	3	4	9,691,747
•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1	1	1	1,750,674
맞춤형 복지 지원 및 저소득주민 자립기틀 마련	2	2	4	77,540,887
생활안정자금 용자를 통해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1	1	1	24,558
•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2	2	3	124,714,558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금천	1	1	1	31,470,184
아이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금천 만들기	3	3	4	71,772,581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과 복지서비스 증진	2	2	3	16,100,705

V.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 예산현액 3,762억 2,459만원 대비 지출액 3,527억 7,911만원으로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3.7%로 2022년도 92.6%보다 1.1%p 증액됨.
- 집행잔액은 총 28억 7,028만원이며 잔액 발생원인별로 보조금정산잔액 15억 1,028만원, 낙찰차액 1,371만원, 지출잔액 13억 4,628만원임.

2.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의료급여기금은 예산현액대비 세입결산액 7억 3,00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징수결정액 12억 2,301만원 대비 49.2%인 6억 1,411만원을 징수함.
- 의료급여기금은 지출액 6억 5,64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6.1%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은 지출액 2,455만원으로 집행률 4.15%임.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2023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소관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총 13건 127억 3,118만 8천원이며
 - 사고이월은 총 9건 34억 5,259만 8천원이 이월되었음.

-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은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요구한 것과 다르게 미지출된 것이므로 향후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많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4. 보조금 결산

- 복지가족국 보조금 집행현황은 일반회계 기준 3,314억 9,578만 원을 수령하여, 3,176억 8,038만 원을 지출하고, 86억 9,92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수령액의 1.54%인 51억 2,012만 원으로 보조사업의 경우 내시액 증감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세입·세출이 정확히 일치할 수 없으나, 추경 예산편성,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5. 기금 결산

- 복지가족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은 자활기금 등 3개이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17억 2,876만원이며
 - 당해연도 증감액은 2억 1,610만원이며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8억 8,216만원임.

6. 성과 보고

- 전략목표 : 서로 함께 돌보는 든든한 금천, 평생동행 복지도시 조성
복지가족국 소관은 1개의 전략목표와 8개의 정책사업목표, 15개의 성과지표를 정하였고, 계획대로 성과지표 15개를 전부 달성함.

7. 검토 의견

- 우리 구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10.5%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가족국의 세출예산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행되었음.
잔액발생사유의 대부분은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약 5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지출잔액 46.9%, 낙찰차액 0.5%로 향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추구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일부 사업의 과도한 집행잔액 사업은 그 발생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이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예산 전용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지출을 보충하는 역할이므로 당초 구의회가 의결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금천구 2023년도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 지출이 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복지 욕구에 부응하여 사업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지 증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됨.

관계법령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50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8.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16.] [대통령령 제34408호, 2024. 4. 16., 일부개정]

-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6.>

☞ 기금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